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9. 14 선고 2022가단104145(본소), 2022가단114784(반소) 판결
[면책확인 · 보증금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 송하섭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9. 14.

주 문

1. 이 사건 본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2022. 6. 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선택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32,766,53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1년 제196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반소: 주문 제3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1. 6. 17. 사임하였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11. 해산 간주되었고, 2020. 12. 11. 청산종결간주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1. 11. 3.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B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3., 연체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 채무에 대하여 7,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B은행, 이 사건 회사는 2011. 11. 8.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라. B은행은 2014. 4. 29.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201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6107호로 이 사건 회사 및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1. 7. 원고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 17.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85,378,453원 및 그 중 32,766,589원에 대하여 2017.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2. 2.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2013하단2979, 2013하면297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4. 3. 28. 파산을 선고하고, 2014. 7. 29.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8. 13.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없었다.

사. 피고는 2021. 11. 11.경 원고에게 2021. 11. 9. 현재 위 대출금 잔액 32,766,589원 및 이자 89,645,535원의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면책확인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면책확인의 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이 사건 면책 결정을 받았고,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도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확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은행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채11028호로 원고의 제3채무자 F에 대한 채권 60,000,00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면책 여부가 다투어지는 채무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본소 청구(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단

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된다.

나. 그러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제7호 본문). 위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앞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신청할 당시 피고의 채무를 알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10. 24.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367주(지분비율 약 20%)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출 직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대출 당시에도 감사의 직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의 발생 및 경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12. 9. 28.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 81672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당시에는

B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2013. 1. 2. 위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위 취하로부터 약 4개월 만인 2013. 5. 24.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채권을 제외하였다.

3) B은 2012. 10. 10.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는바, 이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약 7개월 전이다.

라.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위 채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정근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증한도액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주채무의 원리금이 7,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2017. 3.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2. 6.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이외에 원고를 상대로도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여 위 보증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중 면책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이의의 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윤아영